#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경찰청 (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 (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 (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 (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 (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

-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가.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다. 보호관찰소
-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9.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 의 자동차
-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 6. 28.]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3.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26., 2020. 12. 1.>

- 1.「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6., 2023. 6. 20.>
  -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 3.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전문개정 2013. 6. 28.]

-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면제할 수 있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시장등"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개정 2020. 12. 31., 2023. 6. 20.>

[전문개정 2013. 6. 28.]

-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 1. 모범운전자
  -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9. 7.]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 6. 장의(葬儀) 행렬

[전문개정 2013. 6. 28.]

-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듣지 못하는 사람
  -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 3. 「지방공기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 12. 19.>]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 3. 26.>

-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도로법」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도로법」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15. 6. 3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9.>]

-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3. 6. 28.]
-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 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26.]

-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2022, 11, 29,>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 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 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 4. 30.>

[본조신설 2018. 8. 7.] [제목개정 2019. 4. 30.]

-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1. 20., 2020. 12. 31.>
-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 는 것을 설치할 것
-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전문개정 2013. 6. 28.]
-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 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1. 24.>

-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 2. 매각일시
  - 3. 매각방법
  -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전문개정 2013. 6. 28.]

-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5. 28.>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 2. 1대 이상의 견인차
-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전문개정 2013. 6. 28.]
-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 등은 승합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 3.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3. 26., 2020. 12. 31.>
  -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전문개정 2013. 6. 28.]

-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 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26., 2020. 12. 3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 2. 삭제 < 2023. 6. 20.>
  -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 6. 28.]

-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②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시·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①시·도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 (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
  -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2013. 6. 28.]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 6. 28.>

-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전문개정 2013. 6. 28.]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불법부착 장치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
  -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4.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2023. 12. 19., 2024. 7. 23.>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 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2. 31,, 2020. 11. 10.>
  -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20. 11. 10.>
  -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 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 한 조치의 이행 여부
  -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 6. 28.]

#### 제5장 도로의 사용

-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 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4.>
  - ② 「도로법」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구간・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4.>

[전문개정 2013. 6. 28.]

-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종류・형상 및 수량
  - 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 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 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1. 24.>
  -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6. 28.]

-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 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 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6장 교통안전교육

- 제37조(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삭제 <2018. 4. 24.>

-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개정 2018. 4. 24., 2021. 10. 19.>
- 1. 교통질서
-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 3. 안전운전의 기초
- 4. 교통법규와 안전
-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개정 2014. 12. 16., 2018. 4. 24., 2024. 7. 23.>
-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 7. 26., 2018. 4. 24., 2021. 10. 19.>
-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 6. 28.]

-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 7. 23.>

-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 설비기준
    - 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 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13. 6. 28.]

-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 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6.]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21.

#### 1. 5.>

-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17.>
-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 하는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4. 7. 23.>

[전문개정 2013. 6. 28.]

-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 2024. 7. 23.>
-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1., 2021. 5. 11., 2023. 6. 20.>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 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4. 12. 31,, 2016. 11. 29,, 2017. 7. 26,, 2022. 10. 25,, 2024. 7. 23.>
  -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다. 「의료법」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라. 「병역법」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 · 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삭제 < 2014. 12. 31.>
-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 3.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3. 6. 28.]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 1., 2021. 5. 11.>
- 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 2. 경미한 고장의 분별
- 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실시한다.
- 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 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을 제외하며, 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4, 19.>
  - 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9. 18.>
  - 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 4. 19.>
  - 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 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6. 28.]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전문개정 2013. 6. 28.]
-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24. 7. 23.>
  - 1. 삭제 < 2016. 11. 29.>
  - 2. 삭제 < 2016. 11. 29.>
  - 3. 삭제 < 2016. 11. 29.>
  - 4. 삭제 < 2016. 11. 29.>
  - ② 시·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전문개정 2013. 6. 28.]
-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0. 6. 30., 2020. 12. 31., 2024. 7. 23.>
  -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 거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23.>
-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7. 23.>
-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4. 7. 23.>
  -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 )인 경우
  -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 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 1. 병무청장
  - 2. 보건복지부장관
  -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6.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 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1.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 2. 시설 및 설비
  - 3. 강사의 명단 정원 및 배치 현황
  - 4. 교육과정
  - 5. 개원 예정 연월일
  -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원의 목적 명칭 및 위치
  -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 7. 수강료 및 이용료
  - 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6. 28.]

제61조(변경등록)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설립 운영자의 인적사항
-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12. 3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2조(조건부 등록) 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 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⑤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6. 28.]
-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과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 기능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 7. 26.>
  -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 2. 기능교육강사
    - 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나.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 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 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 2. 교육방법
  - 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 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 3. 운영기준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 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6. 28.]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26.>

-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 2. 기능교육강사
  -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 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 및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 3. 26.>

-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학감(學監)
  -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전문개정 2013. 6. 28.]

-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 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②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 시·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2020. 12. 31.>

- ② 시·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 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 6. 28.]

-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9장 삭제 <2024. 7. 23.>

제73조 삭제 <2024. 7. 23.>

**제74조** 삭제 <2024. 7. 23.>

제75조 삭제 <2024. 7. 23.>

제76조 삭제 <2024. 7. 23.>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7조** 삭제 <2024. 7. 23.>

제78조 삭제 <2024. 7. 23.>

제79조 삭제 <2024. 7. 23.>

제79조의2 삭제 <2024. 7. 23.>

제80조 삭제 <2024. 7. 23.>

제81조 삭제 <2024. 7. 23.>

제82조 삭제 <2024. 7. 23.>

#### 제10장 보칙

-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 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6. 28.]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6. 20.>
-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 · 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12. 1., 2020. 12. 31., 2021. 5. 11.>
-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④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한국도로교통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20. 12. 31., 2024. 7. 23.>
- 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5. 29., 2020. 12. 31., 2024. 7. 23.>
-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 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전문개정 2013. 6. 28.]
-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 2. 위반장소 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하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12. 20 >
  -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7. 법 제74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 12. 삭제 < 2024. 7. 23.>
  -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 15. 삭제 < 2022. 12. 20.>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개정 2022. 12. 20., 2024. 7. 23.>
  -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2. 법 제76조・제103조・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 5. 삭제 < 2022. 12. 20.> [전문개정 2013. 6. 28.]

제87조의4(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 3. 삭제 < 2023. 3. 7.>
- 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0. 12. 31.>

-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12. 31., 2023. 12. 19.>
- 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과태료 체납률
-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 3. 범칙금과의 형평성
-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①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 ⑧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2020. 12. 3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2. 17.>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 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 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도경찰 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 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 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 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본조신설 2016. 11. 29.]

-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민법」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1.]

- 제90조(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과태료 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 2. 과태료 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제91조 삭제 <2008. 6. 20.>

제92조 삭제 <2008. 6. 20.>

-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 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12. 31., 2022. 7. 11.>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11.>
  -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 4. 통고처분 연월일
  - 5.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
  - 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했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 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12. 1., 2020. 12. 31., 2021. 5. 11.>
  - 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보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9.>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 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9.>

제98조의2 삭제 <2017. 5. 29.>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 29.>

-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 4. 통고처분 연월일
- 5. 즉결심판 출석 일시ㆍ장소
- 6.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5. 29.>
- ③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2. 31.>
- 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 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 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7. 5. 29.]

부칙 <제34732호,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